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판결서 공개 시기 단축 및 열람·복사 수수료 면제〉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8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민사판결서 공개(열람·복사)제도 현황	3
2. 개정안의 주요내용	6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7
4. 관계기관 의견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8.
3. 회부연월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

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63조의2).

Ⅲ. 검토의견

1. 민사판결서 공개(열람·복사)제도 현황

현행 「민사소송법」은 누구든지 소송기록 중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열람·복사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63조의2제1항),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같은 조 제3항)¹⁾.

이에 따라 대법원규칙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은 민사소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는 판결서에 대한 비실명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즉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민사판결서를 공개하는 경우

1)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에도 민사소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판결서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최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민사판결서 열람·복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판결서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되었음³⁾⁴⁾.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비실명 처리”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판결서(이하 “판결서”라 한다)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법 제16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을 것
2. 판결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을 것

3) 부 칙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①(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4)참고로 「민사소송법」은 판결서 열람 및 복사의 방식을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규칙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법원은 현재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2006. 5. 1.부터 시행)」 및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 2006. 5. 1.부터 시행)」에 따라 판결서 사본제공 및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판결서 공개 범위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 연혁>

개정 전(2015. 1. 1. 시행)	개정 후(2023 .1. 1. 시행)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u>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u>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u>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u> (<u>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u> ,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의 판결서 공개 시기를 앞당기고 판결서를 무료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인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u>판결서</u> 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u>제162조제4항·제5항 및 제163조</u> 를 준용한다. <u><신설></u> ⑥ (생략)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판결서는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u> -----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u>제162조제4항 및 제163조</u> ----- ----- ----- ⑥ <u>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판결서 공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평균 35일이 소요되었으나 2023년에는 비실명화 완료된 판결서를 기준으로 비실명화 작업이 완료되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65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됨⁵⁾.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됨⁶⁾에 따라 판결서의 비실명화 처리⁷⁾를 위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기간은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에 의한 작업 물량 적체로

5)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24.8.21.) 참고

6)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포함, 이하 같음) 판결서만 공개 대상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민사 미확정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편입됨

7)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제4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성명,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

1.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을 포함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제5조 (비실명 처리의 방식) ① 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② 판결서 등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대표자 성명, 주소, 대표자 주소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③ 증거목록을 포함한 판결서 등이 PDF 파일 등일 경우, [] 등을 사용하여 가리는 등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인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법원의 판결서 공개를 위한 비실명조치 절차>

(판결 선고 → 등록 →) 판결서 데이터 접수 → 1차 비실명 편집(사업자 수행) → 2차 비실명 편집 확인(사업자 수행) → 품질검수(사업자 수행) → 검사(법원관리자) → PDF파일로 변환 → PDF변환 검증(법원관리자)

자료 : 법원행정처

판결서의 신속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유사한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신속히 제공하여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민사판결서 공개 시기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기간도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로 짧게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면이 있음.

다만,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⁸⁾ 당사자가 판결서를 송달받기도 전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하는 데⁹⁾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8) 「민사소송법」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9) 「민사소송법」

해당 기간 내에 판결서가 공개된다면 당사자가 적절한 소송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음. 또한 판결서에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 또는 영업비밀 등이 적혀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 제163조¹⁰⁾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판결서의 열람 등 제한 신청여부에 관한 의사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¹¹⁾도 있는 만큼, 당사자가 판결서를 송달받기도 전에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법원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통해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¹²⁾ 해당 수입을 일반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음.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0)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11) 법원행정처 의견

1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사람은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민사 등 판결서 열람 수수료>

(단위 : 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열람 및 복사 수수료 세입	228,212,000	566,635,000	1,122,667,000	1,539,663,000

자료: 법원행정처

개정안과 같이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무료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공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¹³⁾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우선 판결서 공개 시점을 판결선고 후 단기간이 지난 시점으로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등 보호에 큰 허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¹⁴⁾, 선고 후 10일 내 비실명조치를 완료한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물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예

13) 법원행정처 의견

14)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열람할 수 있는 주체를 소송당사자로 제한하는 조치(열람 등 제한)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당사자의 이와 같은 열람 등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외의 제3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없음(법 제163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당사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판결서 내용 중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 또는 영업비밀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제163조에 근거하여 재판서의 열람 등 제한 신청여부에 관한 의사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일률적인 공개시한을 설정하는 경우 열람 등 제한 신청에 대한 재판의 확정 시까지 제3자의 열람 등 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는 제163조 제2항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음.

산·인력 사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가능성이 높은 판결서 공개를 위한 작업 기간을 법률에 비탄력적으로 명시할 경우 법의 준수를 담보하기 곤란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고, 판결서 공개기간을 정함에 있어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 것은 양 제도의 취지 및 그 기간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10일 이내 판결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판결서 열람·복사 수수료는 판결서 공개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고, 악의적인 판결정보 이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 해외에서도 수수료 부과 없이 선별하지 않은 판결서 데이터베이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¹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

15) 해외 각국도 법원이 선례적 가치가 있어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판례가 아닌 이상(cf. 우리 법원도 선례적 가치가 있는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선별하여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있음), 대부분 판결서 열람·복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예시) 미국: 1장당 \$0.1(약 130원), 최대 \$3(약 3,900원)까지 부과